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37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민병덕·김남근·김재원

이강일 · 장철민 · 박희승

천하람 • 이해민 • 이용우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위헌적·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하여 그 효력 발생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할 필요가 있음.

한편, 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계엄법」 제9조제1항은 위 헌법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이번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

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었음.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더불어, '12.3 내란사태'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고,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했음.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현행범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기능을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계엄의 효력은 국회에 그 통고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단체행동에 대한 위헌적 특별조치권은 삭제하는 한편,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 시 그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고,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는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여 「계엄법」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 등).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체"를 "이를 지체"로, "하여야 한다"를 "하고, 그 통고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를 "결사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을 "회복 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따라"를 "본문에 따라"로 한다.

단,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중 "중"을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할 때까지" 로,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를 "체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	
는 <u>지체</u> 없이 국회에 통고(通	<u>이를 지체</u>
告)하여야 한다.	<u>하고,</u> 그 통고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	①
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	
포・구금(拘禁)・압수・수색・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u>결</u> 사에-
•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	
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u>회복</u>	<u>ই</u>]
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u> 복된</u>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	단,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의
야 한다. <u><단서 신설></u>	한 경우에는 그 계엄의 효력이

- ② 대통령이 제1항에 <u>따라</u> 계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생 략)
-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u>현행</u>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 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u>즉시 상실된 것으로 본다.</u>
② <u>본문에</u>
따라
<u>.</u>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u>후</u>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할 때까지-
<u>체포</u>